

포항공과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운영 지침

제정 2026. 4. 15.

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지침은 본교 다양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및 그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용한다.

제3조(구성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장 : 다양성 관련 식견과 경험이 있는 내부 구성원
2. 당연직위원 :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입학학생처장, 행정처장, 대외협력처장, 인권센터장
3. 임명직위원

가. 교수위원 1명: 학과 순환 방식으로 선임하되, 해당 학과에서 추천한 자

나. 직원위원 1명: 직원 대표로서 직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자

다. 학생위원 1명: 학생회에서 추천한 자

라. 장애관련위원 1명: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자

마. 외국인관련위원 1명: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자

바. 외부위원 1명: 인권·법률 전문가 또는 정책 자문 경력이 있는 자

③ 위원회는 성별, 국적, 연령, 장애 여부, 구성원 신분(교원, 직원, 학생) 등 다양한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다양성 관련 전문적인 조사·연구 및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추가위원을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당업무 소관 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

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

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임기)

- ①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,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기능)

- ① 위원회는 총장직속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1. 본교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제안
 2. 본교의 다양성 관련 현황 분석 및 지표 관리
 3. 본교의 다양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기획·운영
 4. 국내외 다양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
- ②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총장에게 연간 2회 이상 보고한다.

제7조(회의 개최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.
 1. 정기회의: 연간 2회 이상
 2. 임시회의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8조(소위원회 등)

- ①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.
 1. 베리어프리위원회: 장애 구성원의 캠퍼스 생활 및 교수·학습·연구·업무 환경 개선 사항 검토
 2. 글로벌포용위원회: 외국인 구성원의 캠퍼스 생활 및 교수·학습·연구·업무 환경 개선 사항 검토
 3. 성평등위원회: 성평등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검토
- ②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조 제2항 제2호의 당연직위원이 겸임하며, 베리어프리위원회는 행정처장, 글로벌포용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, 성평등위원회는 인권센터장이 각각 맡는다.

③ 소위원회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 1명을 둔다.

1. 배리어프리위원회: 총무팀장

2. 글로벌포용위원회: 국제협력팀장

3. 성평등위원회: 인권센터 담당자

④ 각 소위원회는 그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1. 이 지침은 2026년 4월 15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2.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